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7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오세희 · 김재원 · 이춘석
홍기원 · 이건태 · 민병덕
박정현 · 강경숙 · 김의겸
강준현 · 이수진 · 한준호
김한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
까지 신설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의2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6. 제21조의3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5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의4(종전의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14조의2(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뿌리 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허

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규제개선 신청 등) ① 뿌리기업은 뿌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및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

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3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및 제2항에 따른 규제개선 적용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뿌리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

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2. 제21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사업
3. 그 밖에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심의</u>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 ----- ----- <u>심의 · 의결</u>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21조의2에 따른 인 · 허가 <u>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6. 제21조의3에 따른 규제개선 <u>에 관한 사항</u>
<u><신 설></u>	7. 제21조의5에 따른 예비타당 <u>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u>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4조의2(연구개발사업에 관한 <u>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u>

	<u>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u>
<u>제14조의2</u>(뿌리기업의 확인) (생략)	<u>제14조의3</u>(뿌리기업의 확인)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u>제14조의3</u>(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u>제14조의2</u>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	<u>제14조의4</u>(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u>제14조의3</u>-----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
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
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
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

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

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 등)

① 뿌리기업은 뿌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

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및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신 설>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3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및 제2항에 따른 규제개선 적용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뿌리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2. 제21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
원사업

3. 그 밖에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
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
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
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
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
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
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
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u>시·도지사</u>----- ----- ----- -----. ② (현행과 같음)
---	---